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09.10.07.

발 의 자 : 염운주, 정해원, 이진환, 최형규, 강원돈, 신봉현, 강성국, 고창훈, 김영신, 김정일, 윤동현, 천민식, 홍은희 의원

1. 제안이유

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조제2항)

3. 개정근거

○ 「평생교육법」 (법률 제8852호 2008.02.29) 제31조2항, 제31조제6항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필 요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 : 따로붙임

다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라.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보조금 등 지원) ①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운영비 등 지원)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12조(보조금 등 지원) ①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----------------진흥을----------범위에서----------.
< 신 설 >	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평생교육법

[시행 2009.8.9] [법률 제9641호, 2009.5.8, 일부개정]

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

제16조 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1조 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교원의 복무·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·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·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·절차, 입학자격, 교원 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·절차,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"늘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"

마포구

Digital Mapo

수신자 마포구의회의장

(경유)

제목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 검토 의견서 통보

---

1. 마포구의회-4481(2009.10.8)호와 관련입니다.

2. **"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의견조회"**와 관련 **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**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.

따로붙임 :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1부. 끝.

마포구장

★평생교육팀장 **장재원** 교육지원과장 **김정호** 주민생활국장 10/14 **황중익**

협조자 법무팀장 **장기탁** 대외협력팀장 **조태영**

시행 교육지원과-7489 (2009.10.14.) 접수 마포구의회-4571 (2009.10.14.)

우 121-711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 30(성산동 370) /www.mapo.go.kr
전화 (02)3153-8971 /전송 (02)3153-8989 / jwjang@mapo.go.kr / 공개

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

일부개정조례안명	**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진흥 조례**
발의의원	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의원 등 13명
소관부서	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
상임위원회명 및 상정예정일	복지도시위원회
사전보고 단계	
주요개정내용	□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검토의견	□ 조례개정 이의 없음